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서(소유권 이전자에 대해서는 검사안내문 및 명령서 발송)와 검사과태료부과예정 처분사전통지문 및 집행자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고, 종합검사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방세 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명단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 제목	법적 근거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집행위탁자료 반송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소유권이전자에 대한 검사안내,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공고 기간 : 2020. 4. 17. - 2020. 5. 02.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내에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행정팀 (전화: 02-2680-2704, 팩스: 02-2680-6832)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7일

광 명 시 차량등록사업소장

